

속초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증개정조례(안)

의안	167
번호	

제출년월일 : 1993. 5.

제 출 자 : 속 초 시 장

1. 계 안 사 유

- 납골당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군사원호보상법 폐지 및 국가유공자등록별원호법이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개정되면서 이에 해당하는 자를 감면대상자로 하고자 납골당 사용료 감면 근거조항을 이에 맞게 하기 위한 조례개정임.

2 주 요 골 자

- 군사원호법에 의한 감면규정 삭제
- 국가유공자등록별원호법에 의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감면규정 신설 (안 제7조 참조)

3. 참 고 사 항

- 강원 법무 02124 ~ 98 ('93.3.24) 호로 정비안 시달 ————— 별 첨
- 입 법 예 고 ————— '93. 4. 8 ~ '93. 4. 28
- 시정조정위원회 회의 ————— '93. 4. 29

속초시 조례 제 호

속초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

속초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,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 해당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조 문 대 비 표

현 형	개 정
제7조(사용료) ① 생략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 1. 생략 2.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또는 국가유공자 및 월남 귀순자 3. 특별 원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원호대상자 4. 생략	제7조(사용료)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. 현행과 같음 2. 삭제 3.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원호대상자 4. 현행과 같음